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핵심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하며, 기술 보호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불법 해외인수·합병등에 대한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5.1.21., 법률 제20694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기술심사 기한을 신설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설문조사 시행주기 및 현장방문 실태조사시 사전 통보를 신설하는 한편, 서류 보완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하고, 업무 수행 범위

및 필요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 (영 제7조의2).

나. 산업부장관이 기업등에게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하는 경우, 통지의 대상, 방법 및 절차를 규정 (영 제13조의2)

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변경등록 및 등록말소에 대한 절차 및 제출 서류 등을 규정 (영 제13조의3).

라. 기술 유출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수출에 대해 보호위원회의 심의 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일부 면제하거나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함 (영 제16조의2).

마.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의 장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치명령의 내용, 이행기간 등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대상기관에 통보 (영 제19조제3항및제4항).

바. 불법 해외인수·합병등에 대한 중지·금지·원상회복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위반행위와 인수합병 금액등을 고려하여, 1일 1천만원 이내 이행강제금 부과 (영 제18조의8, 별표2).

사. 수출 승인 자료 제출 협조 거부, 보호조치 명령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과 횟수별 부과기준 등을 정함 (영 별표1).

아. 침해신고를 받은 산업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신고한 내용이 침해행위 금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함 (영 제20조제2항)

자.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 수출 심사시 기술검토 기간의 상한을 설정하도록 함 (영 제13조의2제6항, 제15조제4항, 제16조제4항).

차.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1년마다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대상기관에게 서면으로 미리
통보하도록 함 (영 제22조제3항 및 제4항)

카.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등 심사시,
서류의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함
(영 제13조의2제5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18조의3제3항, 제1
8조의4제3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기술안보센터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기술안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지원 업무
2. 법 제9조의2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등에 관한 지원 업무
3. 법 제11조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에 관한 지원 업무
4. 법 제11조의2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 등에 관한 지원 업무
5. 법 제12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에 관한 지원 업무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6항”을 “법 제9조의2제1항”으로, “대상기관”을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등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명칭,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술분야, 신청기간 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기업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과 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업등이 등록한 특허, 발표 논문 등을 통해 보유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업등이 보유한 산업기술에 대한 침해 신고가 있고 침해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인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4.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5. 기업등이 기술을 수출하거나 해외인수·합병등을 진행할 때 보유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기업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에 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신청인에게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4항 본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4항 단서의 기술심사는 45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4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의3을 제13조의5로 하고,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변경등록) ① 법 제9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기업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기관의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명
2.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분야, 기술명칭, 기술형태 및 특성, 기술보유

사업장

3. 등록 신청 이유에 관한 자료

4. 해당 국가핵심기술 개발과정에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에 관한 참고자료

② 법 제9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기업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기관의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명

2.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분야, 기술명칭, 기술형태 및 특성, 기술보유사업장

3. 변경 등록 신청 이유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변경등록에 관한 참고자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13조의4(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말소)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말소하려는 기업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말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기관의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명
2.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분야, 기술명칭, 기술형태 및 특성, 기술보유
사업장
3. 말소 등록 신청 이유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말소등록에 관한 참고자료

제15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신청인에게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 본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제2항 단서의 기술심사는 45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4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신고인에게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 본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제2항의 단서의 기술심사는 45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4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수출절차의 면제 또는 간소화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기술유출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의 경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 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일부 면제하거나 간소화 할 수 있다.

1. 이미 수출된 기술을 반복해서 수출하는 경우
2. 외국기업이 대상기관의 자회사이거나 이미 기술을 수출한 동일 기업인 경우
3.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이 지분을 모두 보유한 외국 기업등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경우
4. 외국정부 및 기관 등의 인·허가 및 인증, 소송 대응 등을 위한 경우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상기관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출 승인 신청 또는 신고시 세부기술자료 또는 수출상대방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기술의 범위 또는 잠재적인 수출상대방을 정하여 일정기간동안 포괄적으로 승인 또는 신고수리 할 수 있다.

③제1항과 2항에 따른 세부 수출유형, 면제 및 간소화 방식, 그 밖에 수출절차의 일부 면제나 간소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신청인에게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 본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4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신고인에게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 본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5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고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신고인에게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3항 본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8(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1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조치명령의 내용, 이행기간 등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대상기관에 통보한다.④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통보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즉시 조치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하거나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하려”를 “하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 “정보수사기관의 장과”를 “상호”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실시”를 “1년마다 실시”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시기·대상사업장·조사내용 등을 대상기관에게 서면으로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의 ‘별표’를 ‘별표1’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7조의2 (기술안보센터의 지정) ①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한다.</u> ② 제1항의 기술안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지원 업무 2. 법 제9조의2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등에 관한 지원 업무 3. 법 제11조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에 관한 지원 업무 4. 법 제11조의2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 등에 관한 지원 업무 5. 법 제12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에 관한 지원 업무 ③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
제13조의2(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 신청 등) ①<u>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u>	제13조의2(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 신청 등)①<u>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u>

청하려는 대상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대한 판정을 신청하려는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의2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등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명칭,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술분야, 신청기간 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기업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과 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업등이 등록한 특허, 발표 논문 등을 통해 보유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업등이 보유한 산업기술에 대한 침해 신고가 있고 침해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인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판정을 신청한 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 설>

4.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 보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5. 기업등이 기술을 수출하거나 해외인수·합병등을 진행할 때 보유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기업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판정을 신청한 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신청인에게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신 설>

<신 설>

제4항 본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4항 단서의 기술심사는 45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4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의3(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변경등록) ① 법 제9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기업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기관의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명

2.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분야, 기술명칭, 기술형태 및 특성, 기술보유사업장

3. 등록 신청 이유에 관한 자료

4. 해당 국가핵심기술 개발과정에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에 관한 참고자료

② 법 제9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기업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

<신 설>

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보
유기관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
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기관의 기관명, 소재지, 대표
자명

2.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분야, 기술
명칭, 기술형태 및 특성, 기술보유
사업장

3. 변경 등록 신청 이유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의 변경등록에 관한 참고자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
관 등록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13조의4(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말소)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
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말소하려는 기업등은 산업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보
유기관 등록말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기관의 기관명, 소재지, 대표
자명

2.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분야, 기술
명칭, 기술형태 및 특성, 기술보유

제13조의3 (생략)

제15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승인 신청 등) ① (생략)

② (생략)

<신설>

<신설>

③ (생략)

제16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신고)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리고,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업장

3. 말소 등록 신청 이유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말소등록에 관한 참고자료

제13조의5 (현행 제13조의3과 같음)

제15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승인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신청인에게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 본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단서의 기술심사는 45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4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6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신고) ① ~ ② (현행과 같음)

는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해당 신고인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걸리는 일수는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 설>

<신 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신고인에게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 본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단서의 기술심사는 45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4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6조의2(수출절차의 면제 또는 간소화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기술유출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의 경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 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일부 면제하거나 간소화 할 수 있다.

1. 이미 수출된 기술을 반복해서 수출하는 경우

제18조의3(해외인수·합병등의 승인)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해외인수·
 합병등을 승인받으려는 보유기관은 산
 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
 기술 해외인수·합병등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외국기업이 대상기관의 자회사이
 거나 이미 기술을 수출한 동일 기
 업인 경우

3.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이 지분을
 모두 보유한 외국 기업등과의 공
 동연구를 위한 경우

4. 외국정부 및 기관 등의 인·허가
 및 인증, 소송 대응 등을 위한 경
 우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
 상기관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출 승인
 신청 또는 신고시 세부기술자료 또는
 수출상대방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기
 술의 범위 또는 잠재적인 수출상대방
 을 정하여 일정기간동안 포괄적으로
 승인 또는 신고수리 할 수 있다.

③제1항과 2항에 따른 세부 수출유
 형, 면제 및 간소화 방식, 그 밖에 수출
 절차의 일부 면제나 간소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정한다.

제18조의3(해외인수·합병등의 승인)

① ~ ② (현행과 같음)

1. 해외인수·합병등과 관련된 계약서 또는 계획서
2. 해외인수·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의 명칭, 주요 주주 현황, 매출액, 자산총액 및 사업내용에 관한 서류
3. 해당 해외인수·합병등의 내용 및 관련 시장 현황에 관한 자료
4. 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에 관한 기술자료
5. 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에 관한 자료
6.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
7.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45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승인 대상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 이에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 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신청인에게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 본문

제18조의4(해외인수·합병등 진행사실의 신고 등) ①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해외인수·합병등의 진행사실을 신고하려는 보유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합병등 신고서에 제18조의3제1항 각 호의 서류(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서류는 보유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해외인수·합병등에 대하여 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접수일부터 45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고인 및 해당 해외인수·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승인 대상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 이에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 설>

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4(해외인수·합병등 진행사실의 신고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신고인에게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 본문
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과정에서 해외인수·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8조의5(해외인수·합병등의 신고) ①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해외인수·합병등의 신고를 하려는 보유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합병등 신고서에 제18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해외인수·합병등의 진행사실을 신고하려는 보유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합병등 신고서에 제18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서류는 보유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고인 및 해외인수·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8조의5(해외인수·합병등의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함한다)으로 알리고,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외인수·합병등에 대하여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해당 신고인 및 해외인수·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 이에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 설>

제18조의6(해외인수·합병등에 대한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통보 등) ① (생략)

②법 제11조의2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보유기관의 장 및 해외인수·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은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후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위원회는 법 제11조의2제10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해외인수·합병등에 대한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고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신고인에게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3항 본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6(해외인수·합병등에 대한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통보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심의와 관련된 보유기관의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해당 보유기관의 장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

제18조의7(해외인수·합병등의 사전검토) ② 제1항에 따른 해외인수·합병등의 사전검토에 대한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19조(개선권고의 이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하려면 개선권고의 내용, 이행기간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그 개선권고를 이행하기 어렵거나 개선권고 이행기간 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이행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의8(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19조(개선권고의 이행)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조치명령의 내용, 이행기간 등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대상기관에 통보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통보

제20조(산업기술 침해신고) ①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의 침해신고를 하거나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침해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후 지체 없이 산업기술침해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한 내용이 법 제14조 각호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정보수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시할 수 있다.

1.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리 현황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개선권고 이행현황
3. 대상기관의 보안취약점 점검

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즉시 조치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산업기술 침해신고)① (현행과 같음)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의 침해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침해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후 지체 없이 산업기술침해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신고한 내용이 법 제14조 각호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의 보호현황을 파악하거나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u>실시하거나</u>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u><신 설></u>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u>별표와 같다.</u>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u>1년마다 실시하거나</u>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u>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 시기·대상사업장·조사내용 등을 대상 기관에게 서면으로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u>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u>별표1과 같다.</u>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로 한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제2호에 따른 3차 이상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1호	300	500	500

나.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2호	500	700	700
다.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3호	700	1,000	1,000
라. 법 제11조제10항 및 제11조의2제1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협조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4호	700	1,000	1,000
마.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5호	700	1,000	1,000
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 침해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6호	500	700	700
사.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7호	300	500	500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법 제11조의3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산업통상부장관은 조치명령의 이행을 위한 노력과 조치명령 불이행의 정도·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2분의1 범위에서 가중·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법 제11조의2제8항 및 제10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

위반행위	인수합병의 금액	1일당 부과금액
1. 법 제11조의2제8항에 따른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명령에서 정한 조치기간 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천억원 이하	400만원
	1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	600만원
	1조원 초과	800만원
2. 법 제11조의2제10항에 따른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명령에서 정한 조치기간 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천억원 이하	600만원
	1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	800만원
	1조원 초과	1,000만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	
연 락 처	(044) 203 - 4854